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50
----------	--------

제출년월일 : 202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개정(조례 안 제4조)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내용 세분화(조례 안 제6조~제11조)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삭제 (조례 제7조)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방법 삭제 (조례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10. 12.~11. 1.(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5)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3. 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해 설치한 창업보육센터”를 “창업보육센터”로,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창업보육센터의”를 “이 조례는 창업보육센터의”로,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대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운영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4. 예비입주자의 선정
5.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수당 등)”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된다.
-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제11조로 하며,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

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방법)”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2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을 “운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연장”을 “관련부서에서 평가 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5조에 따라----- ----- -----.</p>
<p>제2조(설치)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제1항에 의해 설치한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2조(설치) ①----- ----- <u>중소기업</u> ----- ----- ----- ----- -----.</p> <p>②<u>창업보육센터</u>----- ----- <u>서울특별</u> <u>시</u> ----- ----- ----- -----.</p>
<p>제3조(적용범위) <u>창업보육센터의</u> 운영, 입주승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적용범위) <u>이 조례는 창업보</u> <u>육센터의</u> ----- ----- ----- <u>대하여 적용</u> <u>한다</u></p>

제4조(입주대상 등) ①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사업목적과 분야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거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업으로 한다.

1.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2. 당해 모집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②·③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4조(입주대상 등) ①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4. 예비입주자의 선정
5.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4. 예비입주자의 선정

5.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

6. 기타,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 (생 략)

제9조(운영방법)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공동운영)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공동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 관련부서에서 평가 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 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4조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장-----.

③ 제1항에 따른 -----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이보은 (☎ 3153-8573)